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법률안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333

발의연월일: 2023. 2. 27.

발 의 자:정성호·김병욱·윤후덕

서동용 · 김성주 · 안규백

송옥주 · 박상혁 · 김병주

주철현 · 김정호 · 이동주

최기상 · 임종성 · 김영배

송기헌 · 송갑석 의원

(179]

제안이유

국내 방위산업은 1970년대 초 소총, 박격포 등 기본병기 국산화를 시작으로 현재는 전투기, 잠수함 등 첨단 무기체계 국산화 개발은 물론 방산기술까지 수출하는 등 지난 50여 년간 비약적 발전을 거듭해왔으며, 특히 방산수출은 최근 5년간 세계 최고의 증가율(177%)을 보였음. 이에 따라, 방산 분야는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과 같이 유망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했음.

한편 연이은 북한의 도발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내외 안보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위협적인 가운데 강력한 국가안보 확립을 위해서는 첨단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기체계 개발주체가 실패를 무릅쓰고 도전적으로 연구개발 하도록

유인하는 제도적 환경이 절실함.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과도한 지체상금, 입찰참가자격제한, 복잡한 분쟁절차 등 업체에 부담을 주고 업체 개발의욕을 저해하는 장애요인들이 산재해 있음.

특히 현재 방위사업 계약에 적용되고 있는 국가계약법은 공사, 용역, 일반물자 구매 및 단순 제조계약 등에 적용하는 것을 기초로 한법령이어서 대부분 고도의 첨단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장기 연구개발인 방위사업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

이처럼 방위사업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 적용으로 인해 첨단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는 물론 방위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세계 방산 4대국에 진입하고자 하는 현 흐름에도 역행하고 있음.

이에 방위사업계약의 특수성을 반영한 동 법률안의 제정을 통하여 첨단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를 뒷받침하는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방산 업체의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켜 방산수출 성과를 지 속함으로써 방위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 으로 육성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방위사업계약의 특수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 한 사항을 국가계약법의 특례로 규율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방위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국방력 강화, 국가안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방위사업 계약 관련 소관부서가 제기한 지체상금, 계약의 변경, 입찰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등의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할 수 있 도록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방위사업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방위사업법에 명시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조치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 라. 방위사업 특성에 부합한 계약 종류·방법·기타 낙찰자 결정방법, 원가계산 등의 계약 체결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마.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 및 방법과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 기준· 방법·절차 등은 방위사업청장이 고시하되, 기재부장관과 협의하도 록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바. 방위사업 계약 특성에 맞는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 사항을 규정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도 그 이전에 체결한 방위사업계약에 대해서는 착수금 및 중도금이 지급 가능하도록 함(안 제7조).
- 사. 핵심기술, 미래도전기술, 신기술 등을 적용하는 계약목적물의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
- 아. 불가항력, 도전적 연구개발 성실수행 실패,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

유 등으로 이행지체 시 수정계약 또는 지체상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계약이행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방산업체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자. 방위사업계약 관련 업체의 불만·이의사항을 심사·조정하는 독립적인 조정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여 전문성, 보안성, 신속성을 높이고 추후 소송으로 인한 과다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위사업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 인 방위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전력화지원요소"란 「방위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 (이하 "무기체계"라 한다)가 획득되어 배치됨과 동시에 운용될 수 있도록 무기체계의 전력화를 위하여 확보되어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말한다.
 - 가. 획득된 무기체계가 전장(戰場)에서 즉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 나. 획득된 무기체계를 전체 수명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수리부속품, 교범(敎範), 기술용역 등을 포함하는 통합체계지원요소
- 2. "방위사업계약"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중에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

한다.

- 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방연구개 발
- 나. 무기체계의 양산 및 운용에 필수적인 전력화지원요소
- 다.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라 한다)
- 라. 심각한 안보 위협, 테러 등의 긴급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군수 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 마. 장병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군수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 3. "장기계약"이란 계약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걸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 4. "방위사업계약상대자"란 방위사업청과 제2호의 계약을 체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방위사업계약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계약심의 위원회(이하 "계약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 방위사업계약 관계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다.
 - 1. 제11조에 따른 지체상금의 부과 및 감면에 관한 사항

- 2. 제12조에 따른 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
- 4. 제15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 5.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 6. 그 밖에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계약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1. 방위사업청 관계 공무원(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임직 원)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지명(또는 임명)하는 자
- 2. 방위사업계약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위사업청장 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 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방위사업학·경제학 등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나.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 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 다. 방위사업 또는 방위사업계약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가목과 나목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③ 제2항제2호의 민간위원은 3명 이내로 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④ 제2항의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한다.
- ⑤ 그 밖에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청렴서약제)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투명성 및 공 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계약심의위원회 및 제17조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조정위원회(이하 "계약조정위원회")의 위원
 - 2. 방위사업계약을 위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참가하는 다음 각 목의 업체 또는 연구기관의 대표 및 임원
 - 가.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 체"라 한다)
 - 나.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일반업체
 - 다.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방위산업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

- 라.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마.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의2에 따른 일반연구기관
- 3. 방위사업계약상대자와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하도급계약(매매계약을 포함하고,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체결하는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공급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와 임원 및 그 업체와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재하도급계약(매매계약을 포함하고,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체결하는 수급업체의 대표와 임원
- ② 제1항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 1. 방위사업계약과 관련된 의사결정·입찰·낙찰 및 계약의 체결· 이행에 대하여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 2. 입찰가격의 사전공개 및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행위 금지 등에 관한 사항
-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의 금지에 관한 사항
- 4. 방위사업 관련 정보의 제공 금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5. 본인의 직위를 이용한 본인 또는 제3자에 대한 부당이익 취득 금

지에 관한 사항

- 6. 불공정한 하도급의 금지에 관한 사항
- 7.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및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의무 위반 금지에 관한 사항
-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이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 ④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계약이행 중단으로인한 국가의 손실 규모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입찰·낙찰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가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제출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계약의 체결 등)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단기계약 · 장기계약·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 등의 방법으로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종류·내용, 낙찰자 결정을 포함한 계약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

- 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방위사업계약이 제1항에 따른 개산계약으로 체결되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계약금액은 실제 발생된 원가자료에 기초하여 결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 및 방법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국가안보 확립을 위하여 방위 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서 생산한 원자재, 소재, 부품, 제품 등을 우선 획득할 수 있다.
- 제7조(착수금 및 중도금) ① 방위사업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범위에서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된 금액은 해당 계약의 수행을 위한 용도 외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급되는 착수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물품을 최종납품할 때까지 정 산을 유예할 수 있다.
 - ③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도,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기 전에 체결한 방위사업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의 종류와 경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착수금 및 중도 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 기준·방법·절차 등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8조(품질보증기간)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업체의 품질보증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품질보증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9조(품질경영체제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제29조의2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 낙찰자결정 시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 1. 방산업체
 - 2. 일반업체
 - 3. 방위산업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방위사업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군수품의 규격에 따라 군수품을 납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핵심기술 등의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핵심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 또는 신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시가산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지체상금의 부과 및 감면)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방위사업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방위사업계약상대 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이 지체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있다.
 - 1.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방위사업계약상대자 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내용이 국내에 서는 아직 달성하기 어려운 고도의 기술 수준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경우
 - 3.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책임 이외에 정부 또는 협력업체를 포함한 제3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 등이 함께 지체의 원인이 된 경우로서

- 이행의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전부를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부 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 4.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부과 및 감면에 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계약의 변경) ① 계약당사자 간에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할 것을 전제로 성립된 당초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방위사업계약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기간, 금액 또는 조건 등을 변 경할 수 있다.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관계법령에서 계약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 2.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약기간 중 발생한 경우
 - 3. 그 밖에 계약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변경에 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계약 상대방등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를 제출

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 득금과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하여야 한 다.

-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부정한 행위의 정도와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 1. 방위사업계약과 관련된 의사결정·입찰·낙찰 및 계약의 체결· 이행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계약심의위원회 및 계약조정위 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금품·향응 등을 주기로 약속하거나 준 사실이 있는 경우
 - 2. 경쟁입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 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사실이 있는 경우
 - 4. 방위사업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관계공무원에게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 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

- 5.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부당이익을 취득하게 한 사실이 있는 경우
- 6. 방위사업과 관련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면서 원도급 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 7.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 사고 및 보안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 1.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 3.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 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
-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경우

- 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7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경우
- 6.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 7.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가.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자
 -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 는 자
 - 다.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 ③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 ④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 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체 또는 기관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한다.
- ⑦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제15조(과징금)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4조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다.
 - 1.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

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2.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이의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국제입찰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다) 이상의 방위사업계약에서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1. 제11조에 따른 지체상금의 부과 및 감면에 관한 사항
 - 2. 제12조에 따른 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

- 4. 제15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에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 ③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7조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수 있다.
- 제17조(방위사업계약조정위원회) ① 제16조제4항에 따른 재심 사항을 심사·조정하기 위하여 방위사업계약조정위원회(이하 "계약조정위원 회"라 한다)를 방위사업청에 둔다.
 - ② 계약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위촉한 다.
 - 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한 사람
 -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재정학·무역학·회계

- 학·방위사업학 등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 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 3. 방위사업 또는 국가계약 업무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에 준하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 ③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 방위사업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④ 계약조정위원회는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재심을 신청한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및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연장을 의뢰하였을 때에는 연장의 기간 및 사유를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⑤ 계약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에게 우선 알릴 수 있으며, 피신청인은 조정안에 대하여사전에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⑥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제4항에 따른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당 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⑦ 계약조정위원회에는 제1항에 따른 심사·조정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등을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

다.

- ⑧ 그 밖에 계약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심사·조정) ① 계약조정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조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조정하여야 한다.
 - ② 계약조정위원회는 심사·조정의 완료 전에 신청인 및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계약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조정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조정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和解)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방위사업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0조(비밀유지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사람은 방위사업계약과 관련하여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 2. 계약조정위원회 위원
- 3. 제19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 4. 방위사업계약상대자, 하도급계약 수급업체 및 재하도급계약 수급 업체의 대표,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 5. 방위사업계약과 관련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전심사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 제2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 2. 계약조정위원회 위원
 - 3. 제19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
- 4. 방위사업계약과 관련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전심사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 제22조(벌칙) ① 제20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7조에 따라 지급받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그 용도 외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위원회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 계약심의위원회 및 계약조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등 위원회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는 이법 시행일 전에 할 수 있다.
- 제3조(위원의 임기 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 제4조(심의·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방위사업계약 관계 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심의·조정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5조(지체상금의 부과 및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지체상금의 부과 또는 감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6조(계약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입찰공고 되거나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삭제한다.

제58조를 삭제한다.

제62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